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Commission ontarienne des
droits de la personne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보고서

2008 년 5 월

영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간결체 및 전통체) 판도 있습니다.

요청하면 다른 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판: www.ohrc.on.ca

Disponible en français

목차

보고서 개요.....	4
1. 배경	5
2. 인종주의의 규명	7
3. 인종주의와 인종구분	8
4. 인종주의에 대한 집단적 대응	11
5. 결론	13
6.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조사활동	14
부록 A.....	29

ISBN (Print) 한국어: 978-1-4249-6821-3
ISBN (HTML) 한국어: 978-1-4249-6826-8
ISBN (PDF) 한국어: 978-1-4249-6827-5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보고서

보고서 개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위원회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1 개 기관을 만나 협의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경찰서, 지방자치체, 주정부 부처, 지역사회 기관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 기관들로부터 50 여 가지의 대책을 이끌어냈으며 추가로 7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각종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하여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에 대한 교재 및 자료 개발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각 지역 교육위원회)
- 경찰의 지원에 힘입어 조지나 시에 인종관계위원회 (Race Relations Committee) 설립 (조지나 시청, 요크 지역 경찰서)
- 어디에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낚시꾼 사건에 관한 다국어 팜플렛 제작 (온타리오 주 경찰)
- 사건 개요와 인종주의 및 인종주의 비난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 웹사이트에 게재. 해당 지역의 경찰 순찰활동 증강 요청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
- 인종구분에서 비롯된 항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보호국 경찰관들에게 인종구분에 관한 교육 실시 (천연자원부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교사들에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교육 실시 (남부지역 카톨릭 교육위원회 - Conseil Scolaire de District Catholique Centre – Sud)
- 경찰활동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추천안을 심층 검토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이해관계자 대책단(Police-Stakeholder Working Group) 설립 (지역사회안전및교도행정부 -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 2008 년도 낚시철 동안 유사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 모니터링. 위원회는 각 기관이 독자적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올 한해 동안 진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1. 배경

2007년 12월 14일,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의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07년 여름 및 가을 온타리오 주 남부 및 동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들이 신고한 언어적 및 신체적 폭행의 성격을 더 자세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적 문제의 범위를 더 자세히 파악한다.
-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시켜준다.
- 긴장 및 갈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및 담당 정부기관의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
- 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한다.
- 인종주의 및 인종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인다.

2007년 11월, 위원회는 토론토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법률상담소(Metro Toronto Chinese and Southeast Asian Legal Clinic - MTCSALC)와 협력하여 일반의 우려를 듣기 위한 전화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들이 신고한 신체적 및 언어적 폭행이 인종주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목표로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온타리오 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 - 이하 '인권법')*을 촉진하는 의무의 일환으로서 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법* 29 조에는 법으로 금지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긴장 또는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 및 상황을 조사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긴장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도록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각종 기관을 지원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습니다.¹

이 조사는 변화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 인권 체계의 틀 안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체계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 및 공공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사건 조사가 새로운 인권 체계에 의거한 위원회의 활동의 본보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방법론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종주의 및 인종구분 타파에 있어서의 각종 기관 및 개인의 집단적 책임을 인식했습니다. 각 기관은 인종주의 타파에 있어서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폭행 사건이 신고된 지방자치체의 시장을 비롯하여 이민부, 법무부, 교육부, 천연자원부, 지역사회안전및교통행정부, 요크 지역 경찰서, 온타리오 주 경찰,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체협의회(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 – 이하 ‘AMO’), 온타리오 주 남부 및 동부 지역 교육위원회, 낚시꾼 협회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접촉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 및 개인과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21 개 기관에 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며 기타 여러 기관과 협의했습니다. 관계기관과 만나기 전에,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및 기타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인종주의에 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제안은 각 기관의 고유한 임무에 부합되도록 수립된 것이며, 각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종주의 타파 활동을 고려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들의 상당수는 2008 년도 낚시철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관련 사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 밖의 다른 제안들은 보다 포괄적인 것들로서 증오행위,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목표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각 기관 및 지역사회가 모든 집단에 대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사건을 방지하고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제기한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신체적 안전 보장, 지역사회 및 경찰의 지원 확대, 이민자 및 소수민족을 소규모 지역사회와 통합시킬 때의 장벽 규명, 정부의 지도적 역할 규명, 증오범죄에 관한 형법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사이의 지속적 협력 촉진, 공공교육을 통한 고정관념 타파.

위원회는 또한 여러 관계기관이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종주의 타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기관 및 단체가 폭행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위원회와 협의한 후 이 문제에 관한 대책 수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21 개 기관 및 지방자치체로부터 59 가지 대책을

이끌어냈으며, 추가로 7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을 자세히 명시한 도표가 제 6 절에 실려 있습니다.

2. 인종주의의 규명

위원회는 2003 년에 인종구분 조사 보고서 ‘대가 치르기: 인종구분의 인간비용 (Paying the Price: The Human Cost of Racial Profiling)’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종구분이 소수민족 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제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관리 등, 온타리오 주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인종구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타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²

인종차별 및 인종구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인종주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종주의는 종종 공공연하게 표현되지만 미묘하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은밀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 및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 이하 ‘정책’)*에서, 인종주의에는 중대한 불명예가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상황에서 인종주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에서, 여러 기관의 개인들이 인종구분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의향을 나타내고 인종주의 타파의 이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어려운 문제라며, 자신이 취할 행동의 일부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하기를 꺼리는 개인도 많았습니다. 문제를 ‘인종주의’라고 규명할 경우 지역사회 또는 기관 전체가 ‘인종주의자’로 규정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부정적 성격이 영구화될 수도 있으며, 해당 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이런 불명예는 위원회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종주의를 하나의 문제로 규명함으로써 각 기관이 인종주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다 확실한 근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인종주의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개적 대화를 위한 토론헤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종구분 및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 및 민간기관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인종주의와 인종구분

위원회와 토론토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법률상담소가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전화 핫라인을 개설했을 때, 위원회는 언어적 폭행, 낚시도구 파손, 돌팔매질 등의 인종 괴롭힘 사례를 많이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개인과 논의하는 동안,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의 개인들을 상대로 한 인종 괴롭힘 사례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크 지역의 경우, 요크 지역 경찰서가 30 일간의 특수작전 ‘낚시꾼 프로젝트 (Project Fisher)’를 실시하여, 아시아계 캐나다인 경찰관들이 몇몇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다리 밑에서 밤에 평복 차림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들은 바에 따르면, 첫날 작전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안에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차에 탄 사람으로부터 인종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 두 곳에서도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인종적 발언 사례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려준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오래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들과 더불어 이런 여러 가지 사례 보고는 온타리오 주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일부 개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아시아계 캐나다인과 낚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아시아계 캐나다인 감정의 중대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종구분과 낚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위원회는 안전 또는 공공보호를 이유로, 합당한 의심보다는 인종, 피부색, 민족, 혈통, 종교 또는 출신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특정 개인을 더 면밀하게 주의관찰하거나 달리 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종구분으로 규명했습니다. 고정관념에 의거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 오해 또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또는 무자각적 고정관념에 의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다른 집단보다 지나친 낚시, 어류 보호구역 내에서의 낚시, 낚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낚시, 기타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런 고정관념이 폭행에 대한 ‘해명’이나 정당화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이 아시아계 캐나다인과 불법적 낚시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이런 고정관념을 더 면밀한 주의관찰, 차별적 대우 또는 폭력(자경행위로 표현되는)의 근거로 이용할 때 인종구분이 발생합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보고서

이런 차별적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이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다른 집단보다 불법적 낚시를 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한 일련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낚시 규정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낚시 중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체험을 최소화한다고 믿습니다.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몇몇 개인은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지나친 낚시를 한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부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인식은 그릇된 것이며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온타리오 주의 호수 및 강에서 일반적으로 잡히는 어종과 다른 작은 어종을 많이 잡는 것을 목격할 경우 그릇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어종의 상당수는 잡을 수 있는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지나친 낚시를 한다고 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이것이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종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이런 취급은 여전히 인종구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일원이 법을 위반하여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 경우, 소수민족이 아닌 사람도 유사한 상황에서 과연 똑같이 주의관찰의 대상이 되고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오범죄와 인종구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인종구분은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집단적 특징을 부여하는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행동하면서도 이것을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오범죄 행위는 공공연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개인 및 기관과 만나면서 위원회는 또다시 일반의 제한된 수로 접근, 어자원의 감소, 불법적 낚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지역사회 개인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천연자원부 등의 관계기관 및 각 지역 지방자치체에서 낚시 구역 및 어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 지역사회에 있을 수 없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보고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의 개선에 의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정부 및 지역 기관은 공공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아시아계 캐나다인과 낚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천연자원부, 온타리오 주 낚시사냥연합회(Ontario Federation of Anglers and Hunters), 온타리오 주 중국인낚시꾼협회(Ontario Chinese Anglers Association) 등에 고정관념 타파, 인종구분 타파, 인종구분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공공 메시지 전달, 증오행위를 체험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등을 목표로 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Hate Crimes Community Working Group) 보고서

2007년 9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사건이 영어권 주류 미디어에 처음 보도되었을 때, 이런 폭력 행위는 즉각 많은 지역사회 단체에 의해 증오범죄로 규정되고³ 경찰에 의해 증오범죄 수사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또는 아시아계 캐나다인과 함께 낚시하는 사람이 표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뜻하는 인종주의적 명칭이 몇몇 지역에서의 폭행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오와 관련된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폭행 사건 조사와 뉴스 미디어를 통해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의 구성원들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동을 삼가야겠다고 말했으며,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 미디어는 일부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무서워서' 낚시를 못 간다고 보도했습니다.⁴ 이 밖의 다른 사람들도 위원회에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증오 및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 일련의 폭행 사건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증오행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오행위는 원주민, 아프리카계 캐나다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중성자, 유대인, 이슬람교도, 아랍인, 남아시아인, 여성 등, 인권법의 보호를 받는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⁵

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제안한 방안의 상당수가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이하 'HCCWG')*의 작업에 기초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안된 방안들에 대한 토의와 HCCWG 보고서가 부록 A에 실려 있습니다.

학교의 대책

위원회가 모색한 방안의 일부는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반차별 및 반인종주의 교육을 목표로 한 학교 교과과정은 고정관념 타파, 차별이 발생했을 때의 저지, 소수민족 및 평등을 추구하는 기타 집단에 대한 장벽 철폐,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원회는 폭행 사건과 연루되어 경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성인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한 교사에게서 차별적 태도에 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특히 주목할 만한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는 학교에서의 반차별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뒷받침해줍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과 교육기관에서 채택한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4. 인종주의에 대한 집단적 대응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신고한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 지역사회나 기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적 영역 밖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문제로서, 이 일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 제소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집단적 의무가 있는 기관 및 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2003년도 인종구분 조사 보고서 *대가 치르기: 인종구분의 인간비용 및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 및 지침*(“정책”)에는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의 방지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관계기관의 책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책*에는 모든 기관 및 단체가 조직적 또는 제도적 인종차별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긍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에는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조직적 정책, 규정 및 문화 상의 장벽을 조사 및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대가 치르기*에는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은 행위도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종차별이 인식될 경우 인종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에 대한 대응과 방지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통합의 문제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서 눈에 잘 띄고 다른 개인들이 낚시 행태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수민족 집단과의 일반적인 접촉 부족, 그리고 소규모 지역사회의 자원을 침범했다고 하는 소수민족 집단에게서 느껴지는 위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보고서

2006 년도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소수민족 집단은 소도시 또는 시골 지역보다 캐나다 전역의 대도시에서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⁶ 온타리오 주의 많은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상당수가 소수민족 출신인 이민자를 유치하고 통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경제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목표입니다. 폭행 사건 조사에서 지방자치체들은 갈수록 더해지는 인종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지역사회가 안전하며 모든 배경의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체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이민부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민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민자를 각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이민부의 노력에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의 목표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소수민족 집단을 환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는 유럽인 또는 백인 지배적인 지역사회에 이민자를 통합시킬 때 생길 수 있는 인종주의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몇몇 지역사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인종주의의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방자치체들은 신속하게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사회 단체들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터버러에서는 폭행 사건이 보도된 직후 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Race Relations Committee of Peterborough)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터버러, 인근 카운티 및 카와르타 레이크스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경찰은 공식적으로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부 및 온타리오 주 경찰 대표, 아시아계 캐나다인 등의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대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지나 시에서는 시장이 중국계 캐나다인 및 유대계 캐나다인 사회 집단을 만나 아시아계 캐나다인 및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일반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며, 문제를 심각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공식적 기구

인종주의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인종 관련 긴장 및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여러 지방자치체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주창한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Coalition of Municipal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 이하 'CMARD')**에 가입했습니다. 이 연합의 목표는 인종주의를 타파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체들과 정보 및 정책을 공유하는 활동에 지방자치체 및 그 주민을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보고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윈저 시가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윈저 시는 2007년 1월 CMARD에 힘입어 인종관계 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덕분에 이슬람공포증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강의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러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로서,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의 한 시의원은 시의회에 CMARD 가입을 제안할 계획이며, 조지나 시는 인종관계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피터버러 시도 CMARD 가입을 위한 동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체협의회는 인종주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지역사회에 소수민족 사회를 대표하는 개인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인종주의의 현실과 그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도록 장려합니다.

5. 결론

차별적 태도 및 행동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주의 각 기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많은 기관, 지방자치체 및 정부 부처가 인종주의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각종 안전에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를 다루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이끌어낸 각종 대책은 근본적으로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체험한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타리오 주 전역의 각급 도시 및 기관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이민자 및 소수민족 집단이 온타리오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분야의 성공이 성취될 것입니다.

각 기관 및 지방자치체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진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및 증오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모든 기관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대책 시행을 지원하고, 그 진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과업을 한층더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런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여가활동으로서의 낚시를 즐기는 모든 배경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자원 이용 기회가 증진되리라고 기대합니다.

6.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조사활동

	기관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대응/반인종주의 대책 추진 현황*
1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체협의회(AMO)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책에 대한 이민위원회의 연구조사 중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에 관한 내용 채택 2. 회의에서 낚시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인종주의 사건에 진취적으로 대응한 몇몇 지역사회 소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범위한 문제들 중 인종주의, 문화적 감수성, 차별 및 증오에 관한 문제를 연구조사 주제로 추가 2. '수용적 지역사회'에 관한 워크숍에서 낚시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차별 및 증오행위 사건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사례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는 경찰자문위원회 (Police Services Advisory Committee) 위원으로서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방안을 검토 및 수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2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MARD(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 가입 3.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에 CMARD 가입 안건 상정 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인종주의 및 차별을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서 게재 3. 카와르타 레이크스를 수용적인 지역사회로 홍보하고 차별은 중대한 문제로 다룬다는 내용의 성명서/사설을 낚시철이 시작될 때 아시아어 미디어를 통해 발표 4. 온타리오 주 경찰과 협력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지역사회 내 순찰활동 강화 요청 5. 지역사회 기관의 지역사업(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의원이 낚시꾼 사건에 대한 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시장이 성명서 발표. 시청에서 낚시꾼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 이 세로항목은 낚시꾼 사건에 대한, 반인종주의 운동과 상응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체의 대응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반응은 또는 반인종주의 방안의 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3	피터버러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MARD 가입 2. 시청 웹사이트에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에 지역이민부협력사무소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설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 안건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관계위원회(RRC)가 낚시꾼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함 • 시의회에서 CMARD 안건 통과 • RRC가 공공교육 및 공공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는 단체 설립
4	웨스트포트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MARD(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 가입 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립된 대책 없음	
5	조지나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MARD(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 가입 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3. 인종관계위원회 설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종관계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지나 시장이 낚시꾼 사건을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사회 집단과 면담 • 조지나 시장이 문제에 관해 교육청과 면담
6	요크 지역 경찰서(YRP)	<p>위원회와 YRP의 협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오범죄(특히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에 대한 공공교육 강화 2.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경찰 서비스 이용 문호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사건 사례를 증오범죄 관련 청소년 공공교육 교과과정에 추가 2. 요크 경찰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 학교에 통지 3. 문제에 관해 학부모협의회와 토의 4. 인종관계위원회의 설립 및 지속적 지원에 관해 조지나 시 지원 5. 다국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오범죄 수사대와 다양성및문화자원부 (Diversity and Cultural Resources Bureau) 창설 • 증오범죄 수사대에 낚시꾼 사건 수사 지시 • 비밀작전 '낚시꾼 프로젝트' 실시 •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2008년 봄에 '안전한

			<p>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중요행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미디어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홍보</p> <p>6. 낚시꾼 사건 사례를 중요범죄에 관한 연례 경찰관 자격갱신 시험에 추가</p>	<p>물가 프로젝트 (Project Safe Shores)'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경찰관에게 매년 중요범죄에 관한 자격갱신 교육 실시 • 문제에 관한 팸플릿 제작 • 중요행위 사건 감시(기소되지 않는 사건도 포함) <p><i>*OHRC 는 낚시철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관에게 중요범죄에 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i></p>
--	--	--	---	--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조사활동

	기관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대응/반인종주의 대책 추진 현황
7	온타리오 주 경찰 (OPP)	<p>위원회와 OPP 의 협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오범죄(특히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에 대한 공공교육 강화 2.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경찰 서비스 이용 문호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학교 범죄수사 과목 교육에 증오범죄 전문가를 투입하여 경찰관에 대한 증오범죄 교육 강화. 증오범죄 수사대가 온타리오 경찰대학 (Ontario Police College)과 이 분야의 교과과정 강화에 대해 협의 2. 증오범죄 및 증오행위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OPP 증오범죄 수사대는 낚시꾼 사건에 대한 토론을 공공교육 교과과정에 추가. 사건 발생 지역의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에 대해 홍보 3.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관한 지역사회/경찰 협력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팜플렛 제작. 이 팜플렛은 다국어로 제작되며 2008년 낚시철에 발간될 예정임. 4. 경찰에 신고된 증오행위 사건이 범죄 성립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인종 비방 등), 증오범죄 연락관(Hate Crimes Liaison Officer)을 통해 이런 사건을 추적 및 감시하고 피해자를 적절한 서비스기관에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오범죄/극단주의 수사대 (Hate Crimes/ Extremism Unit) 창설. OPP 경찰관의 증오범죄 확인 및 수사 훈련 지원, 정보 수집, 특별 수사 지원 제공. • 법집행요원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관련 연례회의 실시 • 일선근무 OPP 에 증오범죄 연락관 제도 (Hate Crime Liaison Officer Program) 도입. OPP 경찰관 72 명이 증오범죄 감시 및 수사를 통해 각 파견대 지원. •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에 따라 온타리오 경찰대학의 <i>증오범죄 대응 책자 (Responding to Hate Crime Booklet)</i> 제작 지원 • MCSCS 의 증오범죄 신고 관련 범죄퇴치운동 (Crime Stoppers) 비디오 제작 지원 • OPP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일선 훈련 비디오

			5. 이 문제 및 전반적 중요범죄 문제에 관해 지역사회 협력기관(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개발 예정 <i>*OHRC 는 낚시철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관에게 중요범죄에 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i>
8	천연자원부(MN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인종구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인종에 근거한 그릇된 항의를 하는 개인에게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 실시 2. 인종 및 기타 <i>인권법</i> 근거를 바탕으로 낚시꾼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심의 중 3. 경찰과 공조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MNR 관련 법규를 집행하고, 폭행 사건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고, 폭행이 발생할 경우의 신고처에 대한 정보 제공 4. 낚시철 시작을 맞아 낚시꾼을 환영하고, 차별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밀렵/불법 낚시는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메시지를 MNR 웹사이트에 게재 5. 낚시꾼 단체 및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 낚시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배척하는 공공교육 방안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보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종에 근거한 그릇된 항의에 대응할 때 인종구분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 실시. 낚시꾼 사건을 훈련 범례로 채택. 위원회는 MNR 에 인종구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없지만, MNR 은 위원회와 공조하여 인종구분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임. 2. 경찰과 공조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MNR 관련 법규를 집행(특히 다음 낚시철이 시작될 때) 3. 이민부 및 기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2008 년도 낚시철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 2008 년도 낚시 법규가 실린 책자에 아래 메시지를 게재함(중국어판에만): “우리는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낚시꾼도 존중해야 하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4. 낚시꾼 단체 및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 낚시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배척하는 공공교육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계 캐나다인 낚시꾼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의 낚시꾼을 포함하도록 홍보활동 확대 • 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 어류및야생생물유산위원회 (Fish and Wildlife Heritage Commission)와의 공조가 시작되었으며 MNR 은 이 두 기관과 우선적으로 협력할 것임. <p><i>비고: 위원회는 반인종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MNR 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i></p>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조사활동

	기관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대응/반인종주의 대책 추진 현황
9	이민부(MCI)	<p>1. 이민부 장관 및 이민부가 다음 목표를 업무에 두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규명:</p> <p>a. 조사에 관한 정부의 대책과 그 결과를 촉진 및 보고한다.</p> <p>b. 정부 시책에서 인종적 다양성과 평등이 존중되고 증진되도록 정부 및 정책 개발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원한다.</p> <p>c. 인종구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과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거나, 인종구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과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정부 시책을 지원한다.</p> <p>d.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공공의 인식과 교육활동을 촉진하거나,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공공의 인식과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정부 시책을 지원한다.</p> <p>2. 낚시꾼 사건과 신고된 폭행 사건을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로 인정 및 비난하는 홍보 계획을 낚시철(2008년 봄)이 시작될 시기에 맞추어 개발</p>	<p>1. OPS 내에서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p> <p>a. 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p> <p>b.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종적 다양성과 평등이 존중되도록, 이민부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p>c. 이민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특정 목적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인종구분에 대한 OHRC와의 협의 개시 제의</p> <p>d. 이민부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공공의 인식 및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p>2. MNR 및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행 사건에 관한 홍보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부는 다양성과 평등의 증진을 목표로 한 여러 시책을 지원함. 위원회는 반인종주의 활동을 촉진하고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민부와 협력할 것임.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조사활동

	기관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대응/반인종주의 대책 추진 현황
9	이민부(계속)	3. 향후 이민부의 이민 관련 시책 또는 캐나다 이민국과의 공조사업에 통합 및 고용에 대한 차별적 장벽과 인종주의의 타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 4. 법무부와 각 지역 이민 및 이민자 정착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차별/중오범죄 타파를 위한 시책 수립	3.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자금지원 기준 및 자금지원 시책의 시행에 있어서 다양성과 반인종주의를 촉진하는 문안을 입안하는 한편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과 협력하여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추진 4. 중오범죄 관련 국제 위원회에 가입. 이민 및 이민자 정착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의 자원 내에서 차별 및 중오범죄 희생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	앞페이지 참조
10	법무부(MAG)	1.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추천안의 시행을 법무부의 우선과제로 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주도적 역할 규명 2. 중오범죄 희생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자금지원.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3.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오범죄' 및 '중오행위'의 표준 정의를 채택하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중오에 의한 범죄를 형법에 추가하도록 촉구	1. 법무부는 지역사회 중오범죄대책단(HCCWG) 보고서 상의 추천안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취하고 있음을 표명 2. 법무부 관리들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부 및 천연자원부 관리들과 협의 중임. 3. 법무부는 지역사회 기반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관들이 연방/주/준주 회의에서 관리들에게 형법 상의 중오범죄의 중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 피해자 지원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중오범죄 관련 상황에 대한 교육 실시. 향후 2년간 주정부 차원의 교육 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보조금 지급 제도를 통해 피해자 피해진술서 개발을 위한

		<p>4. 전지역 검찰을 대상으로 중오범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 낚시꾼 사건을 교육의 범례로 활용.</p> <p>5.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추천안의 시행에 관한 진전상황 홍보</p> <p>6. 적절할 경우 법무부 대표가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찰 신고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파악하도록 함.</p> <p>7. OHRC(및 MCSCS)와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중오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 수립 (HCCWG 보고서 Rec. 7.1)*</p> <p>8. OHRC(및 MCSCS)와 협력하여 피해자 권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중오범죄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원 개발 (HCCWG 보고서 Rec. 7.3)</p> <p>9. OHRC(및 MCSCS)와 협력하여, 중오행위에 대해 일반을 교육하고 일깨우기 위해 미디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보도 내용 심사 (HCCWG 보고서 Rec. 7.4)</p> <p>10. 중오범죄 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 권리헌장 (Victims' Bill of Rights) 3 조에 의거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O.Reg.456/96 을 개정하고, 모든 중오범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는 내용을 피해자</p>	<p>제도의 적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중오범죄 대책의 결과 및 성공사례를 평가 중임.</p> <p>4. 더 많은 검사들에게 중오범죄 문제에 관한 교육 실시</p> <p>5. 적절할 경우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법무부 대표가 참여</p> <p>6. HCCWG 보고서 6.7 항의 추천안 검토</p> <p>7. 필요할 경우 OHRC 와 협력하여 사회적 홍보운동을 수립하여 피해자 권리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정보/자원 개발</p>	<p>적절한 도구 및 형식에 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타리오 주 피해자 ● 지원서비스(Ontario Victim Services)는 원주민 피해자, 다양한 집단의 피해자, 중오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등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제도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재검토할 예정임 ● 중오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교육 실시 ● 법원 피해자 지원 제도에 의거하여 중오범죄 피해자에게 우선적 지원 서비스 제공 ● 반중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3 개 기관에 보조금 135 만 달러 지급. 2008 년에 보조금 지급 완료. ● 범죄 발생 직후에 긴급지원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신속대응 제도(Victim Quick Response Program)에 중오범죄 피해자를 포함시킴. ● 법률 개발을 반영하고 중오행위와 관련된 현재의
--	--	---	---	---

		권리현장에 추가하는 법안을 입안 (HCCWG 보고서 Rec. 6.7)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 정책 업데이트.
--	--	---	--	--

*비고: 이 표에는 HCCWG 의 추천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추천안 전문과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about/pubs/hatecrimes/HCCWG_full.pdf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조사활동				
	기관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대응/반인종주의 대책 추진 현황
11	지역사회안전및교도행정부 (MCSCS)	<p>1. 다음 내용이 포함된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6.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표준규범(Policing Standards Manual)에서 추천된 증오/편견 범죄 및 증오 선전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12 개월 내에 이 대책을 수정한다. <p>2. 다음 내용이 포함된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 경찰서에 증오범죄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증오범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자원 역할을 하도록 한다. 각 지역 경찰서는 증오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수사하기 위해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그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손쉽고 적절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p>1. MCSCS 는 경찰활동에 영향이 미치는 HCCWG 보고서 상의 추천안을 심층 검토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해관계자 대책단을 설립하고 있는 중임. 이 대책단은 다음달에 면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p> <p>2. 대책단은 경찰표준자문위원회 (Policing Standards Advisory Committee)를 통해 증오/편견 범죄 및 증오 선전에 관한 MCSCS 지침에 대한 개정 제안을 고려할 것임.</p> <p>3. 대책단에서 추천안 6.27 검토. MCSCS 는 증오범죄 수사대가 없는 경찰서에 증오범죄 연락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 년 1 월, 온타리오 경찰대학(OPC)은 <i>증오범죄에 대한 대응: 온타리오 주 경찰관 수사 및 예방 가이드 (Responding to Hate Crimes: An Ontario Police Officer's Guide to Investigation and Prevention)</i>를 제작하여 온타리오 주 각 지역 경찰관에게 배포 2008 년 1 월, OPC 는 온타리오 주 각 지역 경찰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오범죄 인식 프로그램 제작 2008 년 3 월, MCSCS 는 범죄퇴치운동 (Crimestoppers) 증오범죄 인식 DVD 제작. 이 자료는 지역사회 홍보용으로 사용될 것임.

		<p>일반에 공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경찰서는 관할구역 내 모든 주민이 범죄 및 중오범죄 또는 사건을 자신이 가장 편하게 수사할 수 있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p>3.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경찰서장협의회(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사법통계원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등과 협력하여 중오범죄 및 중오행위 사건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관계부처 및 일반에 매년 보고하는 체계 개발 <p>4.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RC(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중오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 수립 <p>5.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RC(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피해자 권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중오범죄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원 개발 <p>6.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7.4:OHRC(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중오행위에 대해 일반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타리오 주 경찰은 중오범죄 관련 문제에 관한 75 명의 일선근무 OPP 경찰관의 훈련을 목적으로 중오범죄 연락관 제도 도입. 이 제도는 중오범죄 전담 수사대가 없는 지방자치체 기관에서 이용. • 인종주의 및 중오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 기관의 방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i>안전하고 활력적인 지역사회 보조금 (Safe and Vital Communities Grant) \$855,000</i> 확보
--	--	--	--	--

		교육하고 일깨우기 위해 미디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보도 내용 심사		
12	교육부(ED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법 보호 대상 지역사회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연하고 조직적인 차별 문제를 다루고, 학생들에게 증오 및 증오 관련 괴롭힘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 자원 및 기술을 제공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촉진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4.2) 2. 사건 발생 지역 교육청의 교과과정에 특정적으로 아시아계 캐나다인 및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체험과 관련된 증오 관련 사건 및 차별에 관한 내용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 발생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 2.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서 차별 및 증오 관련 사건에 대한 토의의 범위 내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 및 낚시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례 및 기대 삽입 3.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서 지역사회 단체의 참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는 주 차원의 평등전략 및 시행계획(Equit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을 개발 중임. 그 핵심 요소의 하나는 반인종주의, 반차별 및 문화적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평등 관련 교과과정 개발 중: 성별 연구, 평등 연구, 세계의 문화 등 • EDU는 일부 교과과정에 반차별에 관한 사례 및 교육적 기대를 추가 중임. • 행동강령 재발간. 증오 선전 및 기타 편견에 의거한 행동 금지.
13	남부지역 카톨릭 교육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사들에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교육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 OPP 를 초청하여 문제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사들에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위협 프로그램 도입. 여러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존중 강조. • 반인종주의 및 반위협 운동에 관해 지속적으로 각급 학교 지원

14	요크 지역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참여 학교에 요크 지역 경찰서(YR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교육부와 협력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 가능할 경우 학교에 YRP 초청 	반인종주의 교육평등팀(Anti-Racism Education Equity Team), 교육청장 직속 인종관계 자문위원회(Director's Race Relations Advisory Committee), 지역사회 인종관계 자문위원회 (Race Relations Advisory Committee) 등 설립
15	요크 지역 카톨릭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참여 학교에 요크 지역 경찰서(YR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교육부와 협력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YRP 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과정에 괴롭힘 금지 내용 추가 사건 발생 직후 조지나 시장을 만나 해결책에 대해 협의
16	카와르타 파인 리지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참여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교육부와 협력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OPP 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 및 다양성 위원회(Equity and Diversity Committee) 소집 사건 발생 후 지역사회 단체(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 캐나다 인종관계재단 -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와 협력하여 반인종주의 및 반탄압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 개발
17	피터버러 빅토리아/노섬벌랜드/클래링턴 카톨릭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참여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가 개발되는 즉시 사용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OPP 와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 및 평등 정책(Diversity and Equity Policy) 개발 중

18	어퍼 캐나다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참여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교육부와 협력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고 이 문제를 학교 이사회에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인종주의, 반인종주의와 인격개발의 관계에 관한 학교 교육 지원
19	이스턴 온타리오 카톨릭 교육청 (CDSBEO)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인종관계 위원회에 참여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교육부와 협력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사례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오는 교장 및 부교장 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킴.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경찰과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민 지원체계 개발,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기념사업 지원 인종주의에 관한 자료 및 교과과정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집단과 협력 중 “CDSBEO의 기본원칙의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복음적 가치이며, 이는 ...교과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20	온타리오 주 낚시사냥연합회 (OFAH)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합법적 및 불법적 낚시에 대한 오해를 규명 낚시철이 시작될 시기에 맞추어, 인종주의를 비난하고 차별 또는 폭행을 당한 낚시꾼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폭행 사건에 대한 공지를 웹사이트에 게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꾼 사건 관련 기사의 발행을 위한 위원회와 <i>Ontario Out of Doors</i> 잡지 편집인의 협의 지원 	
21	온타리오 주 중국인낚시꾼협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대책 수립에 참여(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와 협력): (a) 아시아계 캐나다인이다 다른 지역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의 중대성에 관한 메시지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인종주의, 폭행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안내 	

		<p>집단보다 불법 낚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고정관념 타파</p> <p>(b) 낚시 중에 차별 및 증오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위한 안전 및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p>		
22	<p>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OHRC)</p>		<p>OHRC 는 MAG, MCSCS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HCCWG 보고서 상의 추천안을 시행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c. 7.1: MAG 및 MCSCS 와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증오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 수립 2. Rec. 7.3: MAG 및 MCSCS 와 협력하여 피해자 권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증오범죄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원 개발 3. Rec. 7.4: MAG 및 MCSCS 와 협력하여 증오행위에 대해 일반을 교육하고 일깨우기 위해 미디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보도 내용 심사 4. 인종구분에 관한 교육 실시, 반인종주의 자료 개발에 관하여 MNR 지원 5. 온타리오 <i>Out of Doors</i> 잡지에 게재할 사설을 OFAH 에 제공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 작성을 위해 OFAH 와 협력 6. 요청이 있을 경우, 사례연구 개발 및 	

			<p>인종구분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 지원 제공</p> <p>7. 2008 년도 낚시철 동안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주시하고 관계기관의 각종 대책 시행을 지원.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진전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p>	
--	--	--	---	--

부록 A

지역사회 증오범죄 대책단 보고서와 학교의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 대책단 보고서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은 증오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증오행위: 개인, 집단, 단체 및 국가가 지역사회 내의 차별화된 소수집단을 상대로 나타내는, 기존의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확인 및 유지하고자 하는 편견 및 편협적 표현.

증오범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제 또는 지각된 인종, 민족적 또는 인종적 혈통,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취향 또는 기타 유사한 요소에 근거한 편견에 의해 유발되는, 사람 또는 재산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형사범죄 증오행위.⁷

위원회가 여러 관계기관에 제안한 방안의 상당수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작업에 기초한 것입니다. 2005년, 법무부 장관 및 지역사회안전및교도행정부 장관이 온타리오 주의 증오 및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을 쇄신할 필요를 검토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을 창설했습니다.⁸ 대책단은 형법체계, 교육체계, 인권체계 및 지역사회 기관의 증오행위 및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능력과 증오행위 및 증오범죄 피해자 지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약 200가지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여덟 가지 주제로 압축되며 원주민,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형법체계, 일반의 인식, 사회적 홍보, 시행 및 책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이 규명한 주요 문제의 하나는 증오에 의한 범죄가 형법에서 매우 좁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⁹ 현재 ‘증오 선전’ 및 ‘위해’만 증오에 의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종교적 숭배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 민족말살 옹호, 공공연한 증오 표현, 고의적 증오 부추김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부색, 인종, 종교, 민족적 혈통 또는 성적 취향에 근거한 것일 경우 기소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증오에 의해 유발된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될 수 없습니다.¹⁰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형법상의 증오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였습니다.¹¹

그러나 형법에 의거하여 기소될 수 있는 ‘증오 선전’ 범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증오성 범죄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법체계는 선고변론에 증오 동기를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범죄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법에서 ‘증오’로 성립되는 행위의 의미가 좁고 사법권마다

비일관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범위와 취약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¹²

영국,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등의 다른 사법권에서는 증오에 근거한 범죄가 형법에서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은 이러한 범죄 성립의 효율성을 연구할 것을 추천하고, 온타리오 주정부가 연방정부 및 준주정부와 공조하여 이러한 범죄가 **형법**에 포함되도록 **형법** 개정을 상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추천안 6.2). 위원회도 모든 사법권에서 일관적인 정의를 채택하도록 하고 넓은 의미의 증오범죄가 **형법**에 포함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또 다른 우려는 증오에서 유발된 범죄가 경찰에 축소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증오범죄를 체험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입니다.¹³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낯시 중에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무력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관계당국에 신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¹⁴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단체에 도움을 청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립니다.¹⁵

이는 지역사회 단체가 증오범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해야 할 필요를 한층 더 강조해줍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이러한 추천안은 바버러 홀 경찰총장이 경찰청, 법무부 장관, 이민부 장관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중간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골자입니다:

-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교육 보조용 팸플렛 개발. 이 팸플렛에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이 제안한 넓은 의미의 증오범죄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역사회 기관의 반증오범죄 운동에 보조금 지급
- 피해자 지원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교육 실시
- 형법 집행 절차에 개인 및 지역사회 피해자 피해진술서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연구에 자금 지원
- 법률 개발이 반영되도록 증오범죄에 관한 검찰의 정책 업데이트¹⁶

아울러,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 중 상당수를

교육부, 법무부, 지역사회안전및교도행정부 등 여러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제 5 절의 도표에 이 방안들의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제안된 각종 방안에 대응하여, 각 정부부처는 반인종주의 및 증오 분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내각은 제안된 방안의 일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현재 활동을 촉진하고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각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학교의 대책

교육부와 사건 발생 지역 교육청은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에 대해 가르치고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인종주의와 낚시꾼 사건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교과과정 지원 자료의 개발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인종주의 교육자 및 아시아계 캐나다인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제 6 절의 도표에 교육부 및 각 지역 교육청이 반차별 교육에 관해 이미 착수한 활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 중 하나에 따라 교과과정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추천안 4.2의 내용은 증오에 취약한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을 수정하여 차이 문제와 공공연하고 조직적인 차별 형태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증오를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자원 및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차별적 태도 및 관념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고 증오 관련 사건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추천안 4.9를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위원회와 교육부의 안전한 학교(Safe Schools) 관련 문제에 관한 협의에서,¹⁷ 교육부는 반인종주의 원칙에 관한 교사 및 교장 교육, 교사들에게 흑인, 원주민 및 기타 소수민족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소수민족 학생 및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 안내 등의 다양한 반인종주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¹⁸ 교육부는 이런 방안 중 일부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과 안전한 학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미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에 이러한 방안을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주석

- ¹ *인권법 개정법(Human Rights Code Amendment Act)*, S.O. 2006, c.30 에 의거하여 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Code)*, R.S.O. 1990, c.H. 19.
- ²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2003). *대가 치르다: 인종구분의 인간비용(Paying the Price: the Human Cost of Racial Profiling)*, 온타리오. p. 69.
- ³ 2007년 9월 27일, 지역사회 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크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탄하고 그 연루자를 기소할 것을 요구함.
- 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2007). *기초조사 결과: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Preliminary Findings: Inquiry Into Assaults on Asian Canadian Anglers)*, 온타리오. p. 9.; Peat, D. *두려운 낚시, 아시아계 낚시꾼은 이를 증오범죄로 생각한다(Fishing in Fear, Anglers of Asian descent call it a hate crime)*, 피터버러 조사관, 2007년 10월 26일.
- ⁵ Gannon, M. 및 Mihorean, K. (2004). *캐나다의 형사피해 범죄(Criminal Victimization in Canada)*. 캐나다 통계청, p.7. 및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최종보고서(Addressing Hate Crime in Ontario: Final Report of the Hate Crimes Community Working Group)*, 온타리오. p.19.
- ⁶ 눈에 띄는 소수민족 인구의 96%가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일반 인구는 69%). 캐나다 통계청(2008). 관련 웹사이트: www12.statcan.ca/english/census06/analysis/ethnicorigin/highlights.cfm
- ⁷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최종보고서*, 온타리오. pp.18-19.
- ⁸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근거 문서 및 자료(Addressing Hate Crime in Ontario: Background Document and Resources)*, 온타리오. Part 1, p.1.
- ⁹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최종보고서*, 온타리오. p.51.
- ¹⁰ 개정된 *형법*, R.S.C. 1985, c.C-46 에서 증오 선전은 다음 항목에서 정의되어 있음: 민족말살 옹호 s.318(1), 공공연한 증오 표현, s.319(1) 및 고의적 증오 부추김, s. 319(2).
- ¹¹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근거 문서 및 자료*. 온타리오. Part 4, p. 3.

¹² Janhevich, D.E. (2001). *캐나다의 증오범죄: 문제 개요 및 자료출처(Hate Crime in Canada: An Overview of Issues and Data Sources)*. 오타와: 캐나다 통계청.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최종보고서*, 온타리오. p.22.

¹³ 일반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 - 1999)는 45%로 추산. Silver,W., Mihorean, K. 및 Taylor Butts, A., (2004). *캐나다의 증오범죄(Hate Crime in Canada)*. 오타와: 캐나다 통계청, p.5.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은 몇몇 조사 결과 열 명 중 한 명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지적.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온타리오. p. 13.

¹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2007). *기초조사 결과: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온타리오. p. 5.

¹⁵ 범죄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두 번째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이유일 수 있음. 요약은 Janhevich, D.E. (2001), *캐나다의 증오범죄: 문제 개요 및 자료출처*참조. 오타와: 캐나다 통계청. 2004 년도 일반사회조사에 따르면, 폭력범죄(증오에 의해 유발된 범죄 및 증오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 열 명 중 약 한 명이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Gannon, M. 및 Mihorean, K. (2004). *캐나다의 형사피해 범죄, 2004*. 오타와: 캐나다 통계청, p.13.

¹⁶ 2008 년 3 월 17 일 온타리오 주정부 보도자료, 관련 웹사이트:
ogov.newswire.ca/Ontario/GPOE/2008/03/17/

¹⁷ 위원회는 *교육법 (Education Act)*, R.S.O.1990, c.E2 의 안전한 학교(Safe Schools) 관련 조항이 소수민족 학생 및 장애 학생에게 차별의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항의를 제기함. 2007 년 4 월에 이루어진 쟁점 해결은 학교 규율, 자료 수집, 진취적 규율, 인력 배치 및 교육, 교과과정 등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것임.

¹⁸ 31 조 (b)항 및 (c)항. 교육부와 합의문 전문은 위원회 웹사이트 www.ohrc.on.ca 에서 볼 수 있음.